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실증·시범구역에서의 규제특례, 도심항공교통산업 지원·육성시책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768호, 2023.10.24. 공포, 2024.4.25.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해당 법률에서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기 위한 실무위원회를 국가첨단교통실무위원회로 정하고 심의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국가첨단교통실무위원회에서 사전 검토·조정할 안건에 도심항공교통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대상 추가(안 제106조제3항)
- 나. 국가첨단교통실무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도심항공교통 관계부처인 국방부 및 기상청 소속 공무원 추가(안 별표 4)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1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5호(중전의 제5호) 중 “첨단교통정책”을 “첨단교통정책 및 도심항공교통정책”으로 한다.

5.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에서 “도심항공교통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심형항공기 고시에 관한 사항
6. 도심항공교통법 제4조에 따른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7. 도심항공교통법 제6조에 따른 실증사업구역의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사항
8. 도심항공교통법 제8조에 따른 시범운용구역의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사항
9. 도심항공교통법 제9조에 따른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10. 도심항공교통법 제12조에 따른 버티포트의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사항

11. 도심항공교통법 제13조에 따른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변경·

해제에 관한 사항

12. 도심항공교통법 제15조에 따른 실증사업구역에서의 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

13. 도심항공교통법 제16조에 따른 시범운용구역에서의 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

14. 도심항공교통법 제20조에 따른 시범운용구역 운영 평가결과의 확

정에 관한 사항

별표 4의 1.의 위원란 제1호 중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국무조정실 및 경찰청”을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국방부·국무조정실·경찰청 및 기상청의”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교통체계·정보통신 및 교통기술”을 “교통체계·정보통신·교통기술 및 항공·도심항공교통”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6조(국가교통실무위원회) ① · ② (생략) ③ 국가첨단교통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국가교통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을 검토·조정하거나 법 제108 조제2항제2호 및 이 영 제107조 에 따라 국가교통위원회가 위임 한 안건을 심의한다.	제106조(국가교통실무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u>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국가 교통기술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u>	<u><삭 제></u>
4. <u>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 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의 수 립 및 변경</u>	<u><삭 제></u>
<u><신 설></u>	5. 「 <u>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이하 이 조에서 “ <u>도심항공교통법</u> ” 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 른 도심형항공기 고시에 관한 사항
<u><신 설></u>	6. <u>도심항공교통법 제4조에 따 른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 수</u>

<u><신 설></u>	<u>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 변경에 관한 사항</u>
<u><신 설></u>	7. <u>도심항공교통법 제6조에 따른 실증사업구역의 지정 · 변경 · 해제에 관한 사항</u>
<u><신 설></u>	8. <u>도심항공교통법 제8조에 따른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 변경 · 해제에 관한 사항</u>
<u><신 설></u>	9. <u>도심항공교통법 제9조에 따른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u>
<u><신 설></u>	10. <u>도심항공교통법 제12조에 따른 버티포트의 지정 · 변경 · 해제에 관한 사항</u>
<u><신 설></u>	11. <u>도심항공교통법 제13조에 따른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 변경 · 해제에 관한 사항</u>
<u><신 설></u>	12. <u>도심항공교통법 제15조에 따른 실증사업구역에서의 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u>
<u><신 설></u>	13. <u>도심항공교통법 제16조에 따른 시범운용구역에서의 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u>
<u><신 설></u>	14. <u>도심항공교통법 제20조에 따른 시범운용구역 운영 평가 결과의 확정에 관한 사항</u>

5. 그 밖에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u>첨단교통정책</u>에 관 하여 국가첨단교통실무위원회 의 검토·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 ⑦ (생략)	15. ----- ----- <u>첨단교통정책 및 도</u> <u>심항공교통정책</u>----- ----- ----- ④ ~ ⑦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총괄과	
연 락 처	(044) 201 - 3793